

제 395 호

1978. 8.21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서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61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훈 령

제 370 호	서울특별시경찰국수사본부 운영규정개정규정	3
제 371 호	서울특별시소방본부위임전결규정	6

◎ 고 시

제 135 호	도시계획운동장 (수영장) 시설과적승인	11
제 136 호	도시계획사업 (경기고등학교) 시행허가	11
제 137 호	도시계획시설 (대학교) 지적승인	12
제 138 호	도시계획시설 (국민학교) 결정과 변경및 지적승인	12

◎ 공 고

제 109 호	제 3 층미관지구 (관광도로) 일부변경지정	13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◎ 사 령

-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-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913

훈 령

○서울특별시훈령제 370 호

서울특별시 경찰국수사본부 운영규정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1973년 8월 20일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서울특별시 경찰국수사본부 운영규정개정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살인 기타 중요특이사건(이하 "특별중요사건"이라한다)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의 기능을 능일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발휘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수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수사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사본부의 설치) 경찰국장은 특별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국 행사과장 및 주무직장 또는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 3 조 (수사본부의 설치장소) 수사본

부는 수사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다른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4 조 (수사본부의 설치지시) 경찰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.

1. 설치 장소
2. 사건의 개요
3. 수사요강
4. 건 작호어 필요하 사항

제 5 조 (수사본부장이 되는자 및 그림부)

① 수사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경찰국장이 지명한다.

1. 경찰국 주무과장
2. 경찰국 주무계장
3.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
4. 관내에서 3개이상의 본부설치 대상사건 발생시는 경찰국 수사과장

②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사건(이하 "본부사건"이라한다)의 수사본부를 효율을 지휘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.

제 6 조 (수사본부부장 과 수사권임관이 되는 자 및 그 임무)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.

1 . 경찰국 주무직장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

가 . 경찰국 수사계장

나 .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수사과장

2 . 경찰국 주무직장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

가 .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수사과장

나 . 경찰국장이 지명하는 경정 또는 경감

3 .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이 본부장이 되었을 때

가 .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형사계장

②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장을 직접 보좌하며 수사본부 운영관리의 원할을 기하고 인접 경찰국 서간의 공조 수사지휘에 임한다 .

③ 전항의 편성에 있어서는 경찰국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을 수사권임관으로 수사본부를 인치한 경찰서의 경감 또는 경위를 부전임

관으로 하여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각각 수사의 추진에 임한다 .

④ 권임관과 부권임관은 별도 임명권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전항의 대상자중에서 수사본부장이 지명 근무하게 한다 .

⑤ 수사본부장은 본부요원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로부터 요원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.

⑥ 수사본부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타시도 본부장으로 부터의 공조제보는 성실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.

제 7 조 (경찰서장의 임무) ① 경찰서장은

수사본부 사건수사에 있어서 본부장의 통제에 따라 본부장으로 부터 지시된 수배조사 기타 필요한 수사를 신속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.

② 경찰서장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주무제 경위 1 명을 본부 사건수사에 담당하도록 명하고 파출소 관내의 수배조사용 제반 수사에 대하여 전력을 경주하지 한다

③ 각 경찰서장과 기타 관제 소속장은 본부사건에 관련된 정보 기타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필요한

<p>용담근처를하고 지체없이 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처위를 받아야한다</p> <p>제 8 조 (초동수사반의법칙) 초동수사반은 기술동한 사건에대하여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수사결과를 신속히 수사본부에보고 인계하는 동시에 그후의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</p> <p>제 9 조 (인접경찰서 수사관부의일장) 본부사건 발생지의 인접경찰서 수사주무과장은 본부사건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수사본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신속히 법리현장에 입장하여 수사에 대비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0 조 (수사회의) 수사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본부 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제 11 조 (비치서류) ①수사본부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수사 건입관이 당해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건수사 지휘 및 집행부 2. 수사일지 및 형사 배치표 3. 수사보고 서철 4. 용의자 명부 5. 참고인 명부 <p>②경찰국 또는 경찰서 주무과장은 건립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일괄 철철 비치하고 제정로 반성하는 동시에 금후의 수</p>	<p>사 및 교양자료로 한다</p> <p>③건립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검거사건인 경우에는 3년 미경인 경우에는 장소 시효완성후 1년으로 한다.</p> <p>제 12 조 (수사본부의재산) ①경찰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본부의 재산을 관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2. 상당한 장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에 전망이 없을 때 3. 전 각호 이외에 특별수사한 사건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<p>②경찰국장은 수사본부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관하 경찰서장 기타관외 소속장에게 그 취지를 시달하여야 한다</p> <p>제 13 조 (수사경로회) 본부장은 수사본부의 재배에 즈음하여 특별 된 요없다고 인정할때할 제외하고는 그 본부사건의 수사관계자를 소집하여 수사결과회를 개최하고 수사실적의 경과를 반성 검토하는등 수사기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4 조 (계속수사) ①수사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제할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계속수사를 담당하여야 할 주무</p>
---	---

과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관제서류
공여물등을 인제하고 사후 수사를
시행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
명시하여 주어야 한다.

②전항의 경우를 수한 주무과장
또는 경찰서장은 4회 이상 수
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
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사한 결과
전연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
경찰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수사
를 생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서기 1973년 8월 20일부
터 시행한다.

◎ 서울특별시훈령제 371 호

서울특별시 소방본부위임전결규정을
이에 정한다.

1973년 8월 20일

서울특별시감 양택식

서울특별시 소방본부
위임전결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방본부
소관 사무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
에 의한 결재한정권 합리적으로
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와 능률화
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결구분) ①소방본부장, 과
장, 계장 및 기능별담당자는 별표
에 의한 전결구분에 의하여 각각
전결한다.

②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
받는자는 그 전결사항에 비하여
경이한 사항을 전결한다.

제3조(이례사항) 전결사항이라도
중요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
의견을 붙여 사전에 차상급결재권
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전결의 제한) 전결사항으로
서 다른 과, 계의 소관에 관련된
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그
의견이 다른 때에는 차상급 결재
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책임의 한계) 이 규정에
의하여 전결된 사항에 대하여는
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.

제6조(통제) 문서통제관은 이 규
정에 따른 전결의 정속한 실시여
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
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
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3년 8월 20일부터
시행한다.

별표		위 인 권 결 구 분 보			
인원 번호	구분 명	직 명	사 명	상 명	단 위 명 사
1	과장 및 차장	소방행정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및 방침			
2	"	소방행정운영에 관한 세부실천계획 및 시행			
3	"	소원사항중 타부처다 관련된 사항			
4	"	사회의 불의한 야기할 중요보고 및 처리			
5	"	상보 및 통보사항의 각종 첩보 처리			
6	"	참고사항의 첩보 처리			
7	"	소방령(소방총경)의 조제 및 외출			
8	"	소방경정, 소방경(소방경감)인 조제 및 외출			
9	"	소방위(소방경위)이하의 조제 및 외출처가 (각과 서무계장에 한함)			
10	"	소방위(소방경위)이하 소속과원의 근무지정 및 사부분장			
11	"	감독순서			
12	"	소속직원의 특근명령			
13	"	소방위(소방경위)급 이상의 부외출장			
14	"	소방사이하의 관외출장			
15	"	조사부영 및 결의회서			
16	"	업무일지의 확인			
17	"	정례보고 체계제출 및 자료수집			
18	"	과원 숙스부 정리			
19	"	각과 규정 외의 민원서류 처리			
20	"	각종 면허시험 관리			
21	"	제표양 및 훈련지도			

일련 번호	주 관 빈	전 결 사 항	분 류 장	과 장	계 장	담당 자
1	서 무 계	소나경정급이상 근무에 관한 사항	○			
	"	소나경 (소방경감), 소방위 (소방경위) 급		○		
	"	근무에 관한 사항				
2	"	소나사이하 근무에 관한 사항				○
4	"	소나경정이상 교육지정	○			
5	"	소나경 (소방경감), 소방위 (소방경위) 급 교육지정		○		
6	"	소나사 이하 교육지정				○
7	"	소나경 (소방경감), 소방위 (소방경위) 급 이상의 근무지정	○			
8	"	소나사 이하의 근무지정			○	
9	"	소나경 (소방경감), 소방위 (소방경위) 의 승진, 승급, 전보, 휴직, 정직, 직위해제, 복직, 면직, 과년	○			
10	"	소나사이하의 임용		○		
11	"	소나사이하의 전보			○	
12	"	소방공무원의 포상		○		
13	"	기능직고용원의 임면			○	
14	"	신분증명서 발급 및 회수				○
15	"	비밀취급인가				○
16	"	공무원 년금발입 및 환부금 신청				○
17	"	인사기록 카-드 정리				○
18	"	소방공무원 년금카-드 처리				○
19	"	소방관 정원 책정	○			
20	"	일중운영계획작성			○	
21	"	문서통계, 간행 및 수발				○

일련 번호	주 관 일	진 결 사 항	부 장	과 장	계 장	단 장
22	서 무 계	보존기일 경과분서 제거처분		○		
23	"	당지 및 청중단속		○		
24	"	직원의 건강관리			○	
25	"	복제에 관한 사항			○	
1	감 찰 계	소방행정 감사	○			
2	"	간부급이상 감찰민원	○			
3	"	비간부급의 감찰민원		○		
4	"	일반감찰사건		○		
5	"	소청사건		○		
6	"	제고, 강력장 발급		○		
7	"	징제심의 의결사항		○		
8	"	출석요구				○
1	장 비 계	예산편성 자료	○			
2	"	예산비정요구 (증감포함)		○		
3	"	예산유용 요구		○		
4	"	공사진행		○		
5	"	상급장급, 여비, 공상요금,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집행공회		○		
6	"	금대여등 출납		○		
7	"	비품출납 및 관리전환		○		
8	"	소방차량 관리전환		○		
1	방 호 계	경방계획 및 화재진압	○			
2	"	화재방어 검토회의		○		
3	"	의용소방대 교육훈련			○	
4	"	중요파재 사건			○	

일련번호	주관별	결사항	본부장	과장	계장	담당자
5	방호계	경미화재 사건		○		
6	"	위험물제조소등 허가	○			
7	"	위험물제조소등 단속		○		
8	"	위험물취급주임 면허시험 및 면허증 교부	○			
9	"	위험물취급주임 면허증 재교부			○	
10	"	위험물취급주임 교양		○		
11	"	위험물취급주임 적성검사		○		
12	"	소방수리 유지관리		○		
1	이양계	회재경계지구 지정	○			
2	"	소방검사		○		
3	"	소방시설 축진		○		
4	"	소방대 상환 개수명령	○			
5	"	진축허가 및 준공동의 업무		○		
6	"	이양관계 민원조사		○		
7	"	익화순찰		○		
1	홍보지도계	소방홍보 계획	○			
2	"	산조심 계몽지도		○		
3	"	구보건행물 배부		○		
4	"	소방공보관계 민원처리		○		
5	"	소방훈련지도		○		
6	"	화화관리자 강습 및 기타 교양		○		
7	"	소방설비사 면허		○		
8	"	소방기구 판매업소 허가 및 단속		○		
1	차명실	수신통신 암호제정 및 개정	○			
2	"	수신장비 관리		○		
3	"	수신기기외 시설 이설 및 철거	○			
4	"	수신시설외 보수		○		
5	"	화재활동 지령			○	
6	"	통신요원 지도감독			○	
7	"	화재속보				○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5 호

도시계획운동장(수영장)
시설계획승인

- 1. 건설부 고시제 309호(73.7.25)로 운동장 시설결정에 따른 지적가. 운동장시설결정조서

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고 있다.

1973. 8. 16.

서울특별시장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운동장(수영장)	용산구 동부이촌동 302-105	1,342㎡	

별첨: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6 호

도시계획사업(경기고등학교)
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66호(72.11.6) 및 제127호(73.7.26)로 결정한 도시계획사업(경기고등학교 종합시설의)의 시행을 다음 파장이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 고시 123호(73.4.4)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

1973. 8. 16.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: 경동구 청담동 221-1 외 8필지
- 2. 사업의상류명명칭: 경기고등학교 종합시설사업
- 3.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회교구길
- 4. 시면적: 106,434

- 5. 사업의 착수 중공예정년월일
가. 착 수 : 1973.
나. 준공예정일 : 1974. 8.
- 6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(별첨)
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부, 지적, 소유권대외의 권리명세 : (별첨)
- 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: (별첨)

- 1. 건설부 고시제 318 호 (73.9.1) 토 시설 (대학교)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을 다음과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 호 (73.4.4)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7 호

1973. 8. 16.

도시계획시설(대학교) 지적승인

서울특별시

가. 학교시설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중축	학교(건국대학교)	성동구 (모진, 화양, 자양, 구의) 동 일부지역	495,370	
신축	학교(덕수여대)	도봉구쌍문동 414-11외90여필지	145,278	

별첨 도면표시의 감음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38 호

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(73.4.4)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도시계획시설(국민학교) 결정과 변경 및 지적승인
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

- 1. 도시계획시설(국민학교) 결정과 변경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같이

해관세인에게 보이고 있다.

1973. 8.17.
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계획학교시설 결정 및 변경조서

순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1	동봉천국민학교	관악구봉천동 692-9 외 13 필지	10,560㎡	
2	명 덕국민학교	도봉구월계동 470 외 7 필지	9,514㎡	
3	망 원국민학교	마포구망원동 266-10 외 6 필지	10,503㎡	
4	신우이국민학교	도봉구쌍문동 363-2 외 3 필지	12,309㎡	
5	신도림국민학교	영등포구신도림동 741-3 외 13 필지	12,025㎡	
6	국립학교용지변경	도봉구수유동 192-1	11,421㎡	학교용지

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한다.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59 호

제 3종미관지구(관광도로)
일부변경 지정

1. 당시 관내제 3종미관지구중 관광도로 일부를 일반미관도로로 변경

가. 3종 미관지구 변경조서

경 지정하였기 공고한다.

2. 관청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고 있다.

1973. 8.16.

서울특별시

구분	종 별	구 간	연 장	비 고
기 존 변 경	관 광 도 로	남산도서관앞-한남동삼거리	2,250m	
	일 반 미 관 도 로	이태원 258 - 한남동 3거리	600m	
	관 광 도 로	남산도서관앞-이태원 250	1,650m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사 명

◎ 1973.7.30.

행정개혁위원회 기획 한 남 영
지방시기관에 임박.

6호봉을 급함.

공무원교육원 교사부 근무를
명함.

◎ 1973.8.1.

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김 감 식
전매성 권출을 명함.

◎ 1973.8.13

주택건설과 지방행정기 김 동 만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◎ 1973.8.15.

카포구 농림지원 전 병 도
지방농림지원에 임함.

8호봉을 급함.

남구농지사업소 근무를 명함.

◎ 1973.8.16.

도시가스 지방토목 사 업 소 기 사 변 원 성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동대문구 지방행정기 최 형 규
수도사업소 서

성동구(천호출장소) 근무를 명함.

성 동 구 지방행정기 문 대 춘
수도사업소 서

성동구(영동출장소) 근무를 명함.

성 동 구 지방행정기 김 종 섭
수도사업소 서

성동구(천호출장소) 근무를 명함.

성 북 구 지방행정기 이 중 근
수도사업소 서

도봉구 근무를 명함.

성 북 구 지방행정기 김 세 중
수도사업소 서

도봉구 근무를 명함.

마 포 구 지방행정기 한 형 석
수도사업소 서

영등포구(양서출장소) 근무를 명함.

마 포 구 지방행정기 열 세 동
수도사업소 서

영등포구(양서출장소) 근무를 명함.

영 등 포 구 지방행정기 송 종 석
수도사업소 서

서대문구(은평출장소) 근무를 명함.

영 등 포 구 지방행정기 박 종 태
수도사업소 서

서대문구(은평출장소) 근무를 명함.

용 산 구 지방행정기 이 경 오
서기보

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

성 동 구 지방행정기 이 기 포
서기보

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

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	조진영	경리과 근무를 명함.
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		
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	서영규	서대문구 지방행정 수사보 김관주
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		경리과 근무를 명함.
아동보호소 지방행정 서기보	박상호	성 북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주 사 순흥규
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		건설진정과 근무를 명함.
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	홍유현	건설진정과 지방행정 수사보 박승덕
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		건설진정과 근무를 명함.
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	조양웅	경리과 근무를 명함.
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		
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서기보	강용식	1973. 8. 17
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		
마 포 구 지방행정 서기보	김기성	용 산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보 순진기
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		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
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서기보	박 근	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
중 구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		조직위를 해제함.
중 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 서기보	정상택	세종특별자치도 지방행정 수사보 최영국
도봉구 근무를 명함.		
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서기보	유병갑	지방공무원법제 63조제 1 항
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		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
방호면방위실 주 지방행정 서기보	김영찬	홍지환 명함.

<p>◎ 1973. 8. 18</p>	<p>성북구 근무를 명함.</p>
<p>종로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주 사 정 원 근</p>	<p>김명연</p>
<p>업무과 (상수도특별기동반) 파견</p>	<p>지방농림기원보 시보에 임함.</p>
<p>서대문구 지방행정 은평출장소 주 사 이 상 범</p>	<p>1호봉을 급함.</p>
<p>업무과 (상수도특별기동반) 파견</p>	<p>관악구 근무를 명함.</p>
<p>동대문구 주사 정보 정 춘 섭</p>	<p>김갑섭</p>
<p>업무과 (상수도특별기동반) 파견</p>	<p>지방기계지원보 시보에 임함.</p>
<p>중구 지방행정사 장 연 태</p>	<p>1호봉을 급함.</p>
<p>업무과 (E.D.P.S.I.원) 파견</p>	<p>기전과 근무를 명함.</p>
<p>세정과 지방행정기 박 준 일</p>	<p>서봉선</p>
<p>업무과 (E.D.P.S.I.원) 파견</p>	<p>지방간호지원보 시보에 임함.</p>
<p>세정과 지방정보 신 동 필</p>	<p>1호봉을 급함.</p>
<p>업무과 (E.D.P.S.I.원) 파견</p>	<p>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.</p>
<p>지하철 건설본부 지방행정사 김 영 년</p>	<p>배영숙</p>
<p>지하철건설본부 관리과 관재</p>	<p>지방간호지원보 시보에 임함.</p>
<p>계장 직무대행을 포함</p>	<p>1호봉을 급함.</p>
<p>중부병원 근무를 명함.</p>	<p>중부병원 근무를 명함.</p>
<p>◎ 1973. 8. 20</p>	<p>최종준</p>
<p>영등포병원 지방약무 기원보 김 경 수</p>	<p>지방간호지원보 시보에 임함.</p>
<p>지방보건의연구원보에 임함.</p>	<p>1호봉을 급함.</p>
<p>2호봉을 급함.</p>	<p>중부병원 근무를 명함.</p>
<p>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.</p>	<p>이길순</p>
<p>이주홍</p>	<p>지방간호지원보 시보에 임함.</p>
<p>지방농림기원보 시보에 임함.</p>	<p>1호봉을 급함.</p>
<p>1호봉을 급함.</p>	<p>1호봉을 급함.</p>

<p>아동병원 근무를 명함.</p> <p>이 창 성</p> <p>지방간호사원보 시보에 임함.</p> <p>1호봉을 급함</p> <p>아동병원 근무를 명함.</p> <p>◎ 1973. 8. 25</p> <p>삼립청조림과 농림지원 이 성 수</p> <p>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</p>	<p>지방농림거원에 임함.</p> <p>2호봉을 급함</p> <p>농림부 근무를 명함.</p> <p>은 산 군 서적거사보 정 일 수</p> <p>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</p> <p>지방대적거원에 임함.</p> <p>4호봉을 급함.</p> <p>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
---	---

서 울 북 별 시 강